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첨부”를 “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 추천을 위한 관련절차 및 첨부서류는 참모총장이 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장교 진급(제청)권자 및 부사관 진급권자는”으로, “다음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따라”를 “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여될 계급	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
장교	대령 :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중령이하 : 장성급 지휘관
부사관	장성급 지휘관

제23조제2항 중 “국방부장관”을 “신분별 진급(제청)권자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국방부장관”을 “신분별 진급(제청)권자”로 한다.

제34조를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또는 사관후

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30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.

제34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.

제36조제3항 중 “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”을 “강등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1/2기간이 경과된”으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“경력증명서(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)의”를 “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”로, “인정서)를 발급한다”를 “인정서) 및 별지 제15-1호 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정서)”를 “인정서), 군 직무능력증명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5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, 제22조제2항, 제23조제1항, 제23조제2항, 제24조의

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퇴교자의 현역병 입영 시 계급부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퇴교한 자는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강등 시 진급선발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군 직무능력증명서

제 호

발급목적:

인적사항	군번	계급		
	성명	군사특기		
	전문자격	생년월일		
복무사항	임관일자 (입대일자)	전역(예정)일자		
	복무개월 (격오지 및 접적지역 복무개월)			

직무능력	소 속	직 책	근무기간	직무능력(NCS코드)

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 직무능력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()군 참모총장
해병대사령관

직인

연락처:

유효기간: 20 년 월 일 까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2조(임시계급 부여의 추천)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원현황서를 <u>첨부</u> 하여야 한다.		제22조(임시계급 부여의 추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</u> -----.		
<신 설>		② <u>부사관 임시계급 부여 추천을 위한 관련절차 및 첨부서류는 참모총장이 정한다.</u>		
제23조(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)		제23조(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)		
① <u>국방부장관은</u> 전시·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<u>다음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</u>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.		① <u>장교 진급(제청)권자 및 부사관 진급권자는</u> ----- ----- <u>다음</u> ----- ----- <u>따</u> <u>른 지휘관으로 하여금</u> ----- ----.		
부여될 계급	부여할 수 있는	부여될 계급	부여할 수 있는	
대령	육군: 참모총장 및 군사령관 해군: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 공군: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관	장교	대령 : 참모총장 및 작전사령 중령이하 : 장성급 지휘관	
중령 이하	육군: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 해군: 함대사령관 및 해병사단장 공군: 비행단장급 이상의 지휘관	부사관	장성급 지휘관	

② 제1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발령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(원계급 복귀 보고)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(原階級)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34조(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) 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1학년 및 2학년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재학기간은 1개월을 단위로 환산하며,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아니한다.

② -----

--- 신분별 진급(제청)권자 ---
-----.

제24조(원계급 복귀 보고) -----

----- 신분별 진급(제청)권자 -----
-----.

제34조(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) ① 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30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.

1. 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: 재학기간의 3분의 2

2. 사관후보생과정: 재학기간의 100퍼센트

<신 설>

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.

제87조(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) ① 참모총장(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재직 중인 군인이거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서(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)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

<삭 제>

<삭 제>

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.

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강등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1/2기간이 경과된 -----
-----.

제87조(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) ① -----

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-----

경력증명서(군 복무역량 및 성과 <u>인정서</u>)를 발급한다. ② (생 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(군 복무역량 및 성과 <u>인정서</u>)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.	----- -- <u>인정서</u>) 및 별지 제15-1호 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 <u>인정서</u>), 군 직무능력증명서 ----- -----.
--	--